

채무인수 통지서

채권자	대한민국	
채무자 (경락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 -
	주소	전화번호

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
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해당 경매 물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
원에 낙찰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경락대금(매입대금) 중 위 채권자 대한민국에 지급할 금원은
「민사집행법」 제143조제1항과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매입
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경락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권자는 이를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채권자 대한민국

위 대표자 국가보훈부장관

직인